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연 월 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는 보장계약 서류 제출 기한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러 함(안 제8조)

나. 약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환경피해준비금,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손해조사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손해조사 전에 미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 및 조사대상 사업자 사전고지가 필요하며 손해조사 결과는 보험자·피보험자·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을 신설(안 제20조의2)

보험자·사업자의 조사요청, 과거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

여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사업장 취급물질·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제10조제3항제4호 중 “그”를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운영,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용도·관리·운용 등 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손해조사등의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손해조사등은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

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손해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손해조사등을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손해조사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호 중 “진단서·검사서류”를 “진단서·검사서류·진료기록”으로, “피해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피해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및 본인 증명 서류

제15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실태조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사업단에서 정한다.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2. 보험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한 사업장 목록
3. 환경오염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실태조사 요청 사항 및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②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를 할 때 사업장의 취급 물질 및 시설, 사업장 내부의 안전관리 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험사업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및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험자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할증 및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 현황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	---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 및 신청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첨부서류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사서류·진료기록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6.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및 본인 증명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이 건의 피해조사,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 신청 시 예비조사(30일)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본조사(60일)를 거쳐 피해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조사 15일, 본조사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3일</u>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해당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① ----- ----- ----- <u>15일</u> ----- ----- ----- ----- -----.
1. <u>사업자등록증</u>	<삭 제>
2. <u>해당 시설의 인·허가를 증명하는 서류</u>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의 취급물질 및 배출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관한 서류</u>	4. <u>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u>
5. <u>그 밖에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서류</u>	<삭 제>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등) ①·② (생략)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	③ ----- ----- -----

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운영,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용도·관리·운용 등
그 ---

제13조의2(손해조사등의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손해조사등은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손해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	<u>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u> <u>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u>⑤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손해조사등을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등이 손해조사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u>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 ----- -----
---	---

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 11. (생략)

<신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
----- 진단서·검사서류·진료기록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피해금액-----
--

<삭제>

7. ~ 11. (현행과 같음)

12.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및 본인 증명 서류

제15조의2(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및 법 제25조

<신 설>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실태조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사업단에서 정한다.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현황
2. 보험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한 사업장 목록
3. 환경오염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실태조사 요청 사항 및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②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를 할 때 사업장의 취급 물질 및 시설,

사업장 내부의 안전관리 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험사업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및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험자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할증 및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